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377
----------	-------

발의연월일 : 2026. 6. 19.

발 의 자 : 허성무 · 전용기 · 이수진  
이건태 · 곽상언 · 홍기원  
윤준병 · 염태영 · 송재봉  
이재관 · 이연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단은 이에 근거해 중소기업정책 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융자사업 신청과정에 제3자가 부당하게 관여하여 불법 보험영업, 허위서류 작성 등 부당개입행위 문제가 보도되고 있으나, 현행법에 부당개입행위에 대한 정의와 제재조치를 비롯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융자 신청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체계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당개입행위 금지, 조사, 수사·조사의뢰, 신고·제보 등을 법률에 명시하여 부당개입행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과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7조의2부터 제67조의5까지 신설 등).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의2(제67조의2부터 제67조의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장의2 정책자금융자 관련 부당개입행위 금지 등

제67조의2(부당개입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정책자금융자(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제66조에 따라 시행하는 대출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하려는 중소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의 정책자금융자 신청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그 정책 목적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개입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책자금융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자료를 거짓으로 작성 또는 제출하는 행위
2. 신청기업으로 하여금 제1호의 행위를 하도록 교사(敎唆)·알선하는 행위
3. 정책자금융자 신청 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신청기업을 속이거나 신청기업으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

4. 정책자금용자 신청에 관련한 자문, 서류 작성의 보조 또는 그 밖의 조력을 제공한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보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제67조의3(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7조의2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부당개입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조사대상자”라 한다)에게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석, 진술, 자료제출 요구의 방법·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7조의4(수사·조사 의뢰)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7조의3에 따른 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이하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수사 또는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부당개입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조사대상자가 제67조의3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조사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수사기관등은 부당개입행위에 대한 수사 또는 조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사

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7조의5(신고 및 신고자 보호) ① 누구든지 부당개입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이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 또는 제보(이하 “신고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등의 접수·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당개입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자 및 제보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의 비밀(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말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신고자등이 소속된 기관·단체 또는 법인은 그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신고자등이 신고등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등을 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신고자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부당개입행위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신고자등의 보호, 포상금 지급의 기준·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3조제2항 중 “제62조의5 및 제62조의6”을 “제62조의5, 제62조의6, 제67조의3 및 제67조의5”로 한다.

제84조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7조의2제1호를 위반하여 정책자금융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자료를 거짓으로 작성 또는 제출한 자
2. 제67조의2제2호를 위반하여 신청기업으로 하여금 거짓 작성 또는 제출을 하도록 교사·알선한 자
3. 제67조의2제3호를 위반하여 거짓·과장·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한 자
4. 제67조의2제4호를 위반하여 보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요구한 자

제86조제2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사용”을 “사용(제67조의2제3호를 위반한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1. 제67조의3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진술,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67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그 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당개입행위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책자금융자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밀유지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제83조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위탁받은 자가 접수하였거나 처리한 신고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포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의5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신고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 style="text-align: center;"><u>제5장의2 정책자금융자 관련</u> <u>부당개입행위 금지 등</u></p> <p><u>제67조의2(부당개입행위의 금지)</u> <u>누구든지 정책자금융자(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제66조에 따라 시행하는 대출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하려는 중소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의 정책자금융자 신청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그 정책 목적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개입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정책자금융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자료를 거짓으로 작성 또는 제출하는 행위</u></li> <li><u>2. 신청기업으로 하여금 제1호의 행위를 하도록 교사(教唆)·알선하는 행위</u></li> <li><u>3. 정책자금융자 신청 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u></li> </ol>

<신 설>

으로 신청기업을 속이거나 신청기업으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

4. 정책자금융자 신청에 관련한 자문, 서류 작성의 보조 또는 그 밖의 조력을 제공한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보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제67조의3(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7조의2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부당개입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조사대상자”라 한다)에게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석, 진술, 자료제출 요구의 방법·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제67조의4(수사·조사 의뢰)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7조의3에 따른 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이하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수사 또는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부당개입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조사대상자가 제67조의3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조사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수사기관등은 부당개입행위에 대한 수사 또는 조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67조의5(신고 및 신고자 보호)

① 누구든지 부당개입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이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 또는 제보(이하 “신고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등의 접수·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당개입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자 및 제보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의 비밀(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말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신고자등이 소속된 기관·단체 또는 법인은 그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신고자등이 신고등의 내용

제8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략)

② 제29조, 제62조의5 및 제62조의6에 따른 중소기업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생략)

제84조(벌칙) <신설>

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등을 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신고자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부당개입행위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신고자등의 보호, 포상금 지급의 기준·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62조의5, 제62조의6, 제67조의3 및 제67조의5-----  
-----  
-----  
-----  
-----.

③ (현행과 같음)

제8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신설>

제86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7조의2제1호를 위반하여 정책자금융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자료를 거짓으로 작성 또는 제출한 자

2. 제67조의2제2호를 위반하여 신청기업으로 하여금 거짓 작성 또는 제출을 하도록 교사·알선한 자

3. 제67조의2제3호를 위반하여 거짓·과장·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한 자

② -----  
-----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67조의2제4호를 위반하여 보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요구한 자

제8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제67조의3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p>&lt;신 설&gt;</p> <p>3. 제68조제5항을 위반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u>사용한</u> 자</p> <p>4. (생 략)</p> <p>③ (생 략)</p>	<p><u>진술,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u> <u>·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u></p> <p>2. <u>제67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그 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u></p> <p>3. ----- ----- -----<u>사용(제67조의2제3호를 위반한 경우를 제외한다)</u>-----</p> <p>4.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	--